

의안번호	2212234
의 퇴 인	김형동 의원
회 답 일	2025.11.11.
추계번호	25B4448

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국가 등의 책무)	국가는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·지원하기 위하여 조사·교육·홍보·정보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의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 절차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책무 이행에 협력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2	안 제6조(교육 지원 등)	「노동위원회법」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(이하 “중앙노동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노동분쟁해결 지원인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위원장은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(이하 “지원인교육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		지원인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함(제3항)	의무규정
3	안 제7조(노동분쟁해결 지원인 명부 등재 등)	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성명, 사무소 소재지, 지원인교육 이수 및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노동분쟁해결 지원인 명부(이하 “명부”라 한다) 등재를 신청할 수 있음(제1항) 1. 지원인교육을 이수한 자 2. 노동관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	재량규정
		위원장은 3년마다 제1항에 따라 신청·등재된 명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여 노동분쟁 당사자들의 노동분쟁해결 지원인 선정을 위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		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은 공표된 명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된 경우 등에는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		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부 등재를 반려 또는 철회하거나 지원인 명부를 수정하여 공표할 수 있음(제4항) 1. 명부 등재 및 공표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된 경우 2.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이 제9조에 따른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3.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
		위원장은 명부 등재 및 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이 되려고 하는 자 또는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에게 요청할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		그 밖에 명부 등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함(제6항)	의무규정
4	안 제8조(노동분쟁해결 지원인 활동 등 지원)	위원장은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이를 통한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장려하기 위하여 분쟁해결 활동 및 홍보, 정보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함(제2항)	의무규정
		중앙노동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지원인교육, 명부 등재 및 공표, 활동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5	안 제11조(비용 등 부담)	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은 노동분쟁 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, 조사비 및 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, 다른 합의가 없으면 노동분쟁 당사자들은 해당 비용 등을 각자 부담함(제1항)	의무규정
		국가는 사회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에 대한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, 요건,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함(제3항)	의무규정
6	안 제12조(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의 특례)	노동위원회는 「노동위원회법」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판정·결정·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구제·시정신청 사건(이하 “구제·시정신청 사건”이라 한다)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 당사자들이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구제·시정신청 사건에서의 심판 등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음. 다만,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단된 절차를 재개할 수 있음(제2항)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의 조정 등을 통한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노동분쟁 당사자들이 수락한 경우에는 노동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 등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(제3항)	의무규정
		그 밖에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의 조정 등의 대상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함(제4항)	
7	안 제13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	위원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노동위원회법」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위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과 관련된 관리·운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 기관 또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8	안 제14조(과태료)	제10조를 위반한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제1항)	의무규정
		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과·징수함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(국가 등의 책무)	—	• 미대상 –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2	안 제6조(교육 지원 등)	×	•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본문 참조
3	안 제7조(노동 분쟁해결 지원 인 명부 등제 등)	—	• 미대상(제1항·제3항) - 제정안은 지원인교육을 이수한 자 등¹⁾으로 하여금 성명, 사무소 소재지, 지원인교육 이수 및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노동분쟁해결 지원인 명부(이하 “명부”) 등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은 공표된 명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된 경우 등에는 위원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제정안이 시행되어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		—	• 미대상(제2항, 제4항~제6항) - 제정안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신청·등재된 명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여 노동분쟁 당사자들의 노동분쟁해결 지원인 선정을 위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규정하고, 명부 등재 및 공표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된 경우 등²⁾에는 명부 등재를 반려 또는 철회하거나 지원인 명부를 수정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현재 노동위원회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4	안 제8조(노동 분쟁해결 지원 인 활동 등 지원)	×	• 미첨부(제1항·제2항)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본문 참조
		—	• 미대상(제3항) - 제정안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지원인교육, 명부 등재 및 공표, 활동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- 중앙노동위원회의 직제는 「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에서 규정할 사항으로, 조직 및 정원의 확대는 인력운용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5	안 제11조(비용 등 부담)	—	• 미대상(제1항) - 제정안은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이 노동분쟁 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, 조사비 및 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, 다른 합의가 없으면 노동분쟁 당사자들은 해당 비용 등을 각자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,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		×	• 미첨부(제2항·제3항)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본문 참조
6	안 제12조(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의 특례)	—	• 미대상(제1항) - 제정안은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「노동위원회법」 제2조의2제1호³⁾에 따른 판정·결정·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구제·시정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, 현재 노동위원회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		—	• 미대상(제2항~제4항) - 제정안은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노동분쟁 당사자들이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구제·시정신청 사건에서의 심판 등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당사자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단된 절차를 재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- 또한, 제정안은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의 조정 등을 통한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노동분쟁 당사자들이 수락한 경우에는 노동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 등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7	안 제13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	—	• 미대상(제1항) - 제정안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노동위원회법」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		×	• 미첨부(제2항·제3항)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본문 참조
8	안 제14조(과태료)	—	• 미대상 -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, 이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⁴⁾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음

1) 제정안에 규정된 노동분쟁해결 지원인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음

1. 지원인교육을 이수한 자

2. 상세 사유

- (안 제6조) 제정안은 「노동위원회법」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⁵⁾으로 하여금 노동분쟁해결 지원인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원인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 - 제정안의 시행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분쟁해결 지원인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경우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제정안은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를 통해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며, 현시점에서는 교육지원의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
- (안 제8조제1항·제2항) 제정안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이를 통한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장려하기 위하여 분쟁해결 활동 및 홍보, 정보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

-
- 2. 노동관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- 2) 제정안에 규정된 명부 등재를 반려 또는 철회하거나 지원인 명부를 수정하여 공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
 - 1. 명부 등재 및 공표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된 경우
 - 2.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이 제9조에 따른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3.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3) 제2조의2(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)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, 「근로기준법」,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,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판정·결정의 결·승인·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
 - 4) 제2조(정의) 1. "비용추계서"라 함은 발의·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(이하 "비용"이라 한다)에 관하여 추계(이하 "비용추계"라 한다)한 자료를 말한다. (이하 생략)
 - 5) 제9조(위원장) ①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.
 -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,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
 - 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.
 - ④ 노동위원회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, 심판사건,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,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.

있도록 규정하면서 지원의 절차와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
-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위원장이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의 분쟁해결 활동 및 홍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경우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, 지원의 절차와 범위 등을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며, 현시점에서는 노동분쟁해결 지원인 활동 지원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(안 제11조제2항·제3항)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장을 위하여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에 대한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,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사회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장에서의 노동분쟁 발생 규모와 내용 및 이에 대한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의 수수료, 조사비 및 여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,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
- 또한, 지원의 대상, 요건, 방식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며,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예산의 범위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(안 제13조제2항·제3항) 제정안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제정안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과 관련된 관리·운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
- 제정안의 시행으로 업무 위탁 대가 지급에 따라 국가 재정의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, 권한의 위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하며, 위탁 대가는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, 범위,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 해당 업무가 정

해져 있지 않으므로, 현시점에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희	김신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